

大學의 開放化 추진방안 研究

- ◇ 이 研究는 韓國大學教育協議會의 주관 하에 1991년도 교육 ◇
- ◇ 부 學術研究助成費로 鄭宇鉉(高麗大·연구책임자) 교수 등에 ◇
- ◇ 의해 수행된 것이다. 紙面 관계상 그 내용을 전부 소개하지 못 ◇
- ◇ 하고 目次 및 주요 부분만을 게재한다.〈편집자 주〉 ◇

1. 目 次

I. 序 論	
II. 大學開放의 形成背景과 必要性	
1. 대학개방의 개념	
2. 대학개방의 역사적 변천과정	
3. 현대사회와 대학개방의 필요성	
4. 要約	
III. 韓國大學의 發展과 大學開放의 現況	
1.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발달	
2. 우리나라 大學의 開放化 實態	
IV. 大學開放化와 관련된 問題	
1. 大學開放化를 위한 體制未備	
2. 大學入學制度의 硬直	
3. 學事運營의 硬直	
4. 大學間 協同體制 및 運營의 未備	
5. 大學機能의 分化와 開放化에 대한 社會認識의 不足	
V. 大學開放을 위한 外國大學의 改革動向	
1. 美國 大學의 개혁동향	
2. 英國 大學의 改革動向	
3. 獨逸 大學의 改革動向 (舊西獨 大學을	

중심으로)	
4. 日本 大學의 改革動向	
V. 大學開放의 韓國的 模型探索	
1. 基本方向	
2. 個別大學 차원의 大學開放化 推進方案	
3. 大學間 協同을 통한 大學開放化 推進 方案	
4. 制度의 改善을 통한 大學開放化 推進 方案	
VII. 要約 및 結論	
1. 要約	
2. 結論	
參考文獻	

2. 大學開放의 韩國的 模型

경제적 生산체제의 변화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개방화의 과정을 밟아 온 세계 대학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대학의 개방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더욱이

평생교육의 이념을 교육을 통해 구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의 개방화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이 가까운 장래에 좀더 효과적인 개방체제를 갖추려면 대학교육 관계자들이 대학개방의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학개방의 구체적인 방안을 미리 수립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대학개방의 기본방향을 도출해 내고, 이를 개별대학 차원, 대학간 협동 차원, 그리고 제도적 차원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基本方向

첫째, 대학개방이 대학교육의 質的 水準 혹은 秀越性을 회생해서는 안 된다. 대학교육은 지식의 위계성을 갖지 않은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앞선 교육경험과는 무관하게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선행 혹은 사전의 경험이 뒤따르는 교육에 크게 영향을 주는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高度의 學問的 知識構造의 교수-학습 활동’을 뜻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각 개별 대학 차원 혹은 정부 차원에서는 고등교육의 핵심으로서 대학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대학의 문루를 개방할 수 있는 機制가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大學敎育을 받기를 희망하는 이들에게는 어떠한 形態로든지 대학교육을受惠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최근에 올수록 대학교육에 대한 수혜기회는 교육투자가 갖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해서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 아울러 일정 단계의 교육을 수료한 자의 社會的 進路에 대한 책임 역시 종전에는 교육수혜의 기회를 부여했던 공공기관 혹은 후원자에게 주로 지워졌으나 이제는 교육수혜자 스스로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직업을 찾든지 혹은 창출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어느 특정의 대학 지원자가 그 자신 스스로가 인생 진로를 책임지고 준비하기 위한 자격을 갖출 목적을 지니고 대학교육의 수혜를 희망하는 자에게

는 대학교육에 대한 기회가 어떠한 形態로든지 주어져야 한다.

셋째, 대학개방은 세토운 高等敎育體制의 開發을 통해서가 아닌 기존의 教育체제를 최대한 活用하여 振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체제는 명시적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개방 정도에 따라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부분폐쇄형, 완전폐쇄형 등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각각의 대학은 설립취지에 맞는 개방의 정도를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부분개방형 대학인 방송통신대학이나 부분폐쇄형 대학인 개방대학이 입학시험제도나 교육과정,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에서 개방형 대학체제의 특성을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완전폐쇄형인 전통적인 일반대학의 유형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넷째, 대학개방은 특정의 교육기관 혹은 教育課程이 갖는 상징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學歷中心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피교육자의 학습 동기와 결과를 중히 여기는 기능적 가치에 더한 學力優先의 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全日制課程(full-time courses)의 대학이나 이에 등록하고 있는 학생이 部分登錄課程(part-time courses)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이나 이에 등록한 학생에 대해 서로 갖는 교육목적이나 성취한 교육성과를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우월감을 갖도록 하는 현행의 교육적 位階構造는 ‘學歷 그 자체가 사회적 신분을 결정짓는다’는 이른바 사회적 혈통주의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어느 단계까지의 정규교육을 받았느냐 하는 從의 學歷主義가 지배하였으나, 학교교육이 보다 개방되고 확장된 오늘날에 있어서는 동일한 단계의 학교교육을 마쳤다 하더라도 이수한 학교 혹은 과정의 사회적 평가에 따라 교육수혜자의 사회적 대우가 달라지는 質的 學歷主義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學歷主義보다는 能力主義에 터해서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다섯째, 대학개방은 일차적으로는 대학간 協同의 強化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이차적으로는 산·학간 협동 혹은 산·학·연 협동을 통해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 대학개방은 어느 특정

대학에서만의 제도개혁이나 개방시도에 의해서 성취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대학이 일반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성취해 나갈 대학개혁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개방을 효율적으로 전澈시키기 위해서는 같은 지역에 소재한 대학간, 그리고 비슷한 교육목적을 갖고 유사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간의 협동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교육활동이 지니는 궁극적인 실용성과 응용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과 기업체, 더 나아가 연구소와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한 대학개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個別大學 차원의 方案

첫째, 각 대학은 먼저 대학개방이라는 時代的 要求를 받아들이고 이에 부응하려는 인식의 전환을 꾀해야 한다. 대학의 역사는 바로 개방의 역사로 부를 수 있을 만큼 대학은 개방화의 길을 걸어왔다. 근데에 초등·의무교육이 처음 실시되던 때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고등교육이 사회구성원 거의 모두에게 개방되는 보편화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각 대학은 대학개방이 필연적으로 도래할 대학발전의 과정임을 깨닫고, 이에 따른思考의 轉換을 먼저 이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현행 신입생 선발방식에 있어서 신입생을 複數志望케 하여 선발하거나 점차 현행 學科別 定員制를 대학 또는 系列別 定員制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교육법과 대학학생 정원령의 규정에 따라 각 대학의 입학정원을 명시하고 있는 교육부고시 “대학학생정원”은 대학의 정원을 계열별로 나타내고 있으며, 학과별 정원은 학칙에 따라 규정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칙의 규정 내용에 따라 신입생을 학과별 혹은 계열별로 선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대학개방은 작은 조직단위(unit)의 개방으로부터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 선발에 있어서 학과간의 장벽제거와 복수지망을 통해 학과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셋째, 大學의 學事運營을 開放化體制로 전환시켜야 한다. ① 대학교육프로그램을 多樣化시

킬 필요가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는 전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학문적 수요와 함께 실용적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학문적 수요에 따른 학위 취득과정에 대한 수요와 함께 비학위 과정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다. ② 대학은 학생들에게 部分登錄制(part-time registration)를 허용하여 수업연한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申請學點에 따라 登錄金을 差等있게 납부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여 일시에 소정의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③ 夜間授業이나 季節授業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④ 다양한 教科目을 설치하여 대학교육과정을 운영도록 해야 한다. 각 대학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에서 필요한 과목을 지도 교수와 협의하에 특별히 개설한 후, 특별개설과목에 대한 학습결과에 따라 학점취득을 인정받는 學生獨立研究制(student independent study system)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⑤ 대학 학점취득의 요건을 다양화해야 한다. 각 대학은 學則의 規定을 통해 수강하고 있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밖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경험(예컨대, 특강 참석, 전람회 참석 등)도 학점 취득의 요건에 포함하게 하여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통해 대학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개방의 趣旨에 맞다.

넷째, 大學施設과 實驗實習資材의 活用度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이 정규과정의 학생들에게만 활용되는 것은 학교 기관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 볼 때도 비효율적이다. 각 대학은 스스로 속한 資產을 지역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方案(필요하다면 최소한의 유지경비를 정수해서라도)을 강구해야 하며, 대학개방화 그 자체는 우리 사회가 大學資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3) 大學間 協同을 통한 大學開放化

대학협동은 그 자체가 大學의 開放化를 진작 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대학간에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완전히 폐쇄적인 대학이 있다면 다른

대학과의 협동이란 있을 수 없고, 다른 대학과의 협동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대학교육의 전반적인 개방화가 성취될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진국의 대학일수록, 그리고 오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일수록 대학간 협동을 통한 개방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첫째, 대학간 交叉登錄制(cross registration) 또는 遠隔教育(distance education)을 통한 학점의 교환제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대학간 학점교환의 제도는 가장 오래된 대학협동의 방식이다. 예를 들면 이미 중세기에 옥스포드대학, 케임브리지대학 간에 학점교환이 있었다.

둘째, 대학의 학부와 대학원 간, 그리고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간의 학점교류를 活性化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學部와 大學院은 동일한 인적 자원(교수자원)과 시설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으므로 교과과정의 운영과 학사운영은 지나치게 베타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정한 범위에 있어서, 예를 들면, 기초과목 등에서 공동수강을 적극 권장하고 그 履修學點을 상호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할 수 있다.

셋째, 施設의 상호활용, 教授資源의 상호교류를 통한 대학개방화를 이루도록 한다. 대학이 상호개방을 통해서『도서관·자료의『상호』이용 허용, 과외시간을』이용하여『실험실』 등을 개방하여 증·복시설『투자를 지원하고, 시설유지에 따른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所屬教授의 상호교류를 통해 학문적 풍토를 개선하고, 교수의 교수·연구활동의 범위를 확대시킨다.

넷째, 研究所 운영의 협력체계를 통한 대학개방화를 실천한다. 대학부설연구소를 학문영역별 혹은 지역별로 특성화시켜 시설과 인적 자원을 공동으로 사용토록 한다.

다섯째, 교수의 연구분야와 관련된 학술세미나나 교양 및 특수 분야에서의 협동강연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여섯째, 학생유치 및 대학운영에 필요한 제반 정보를 상호교환한다. 예를 들면, 입학지원자를 대상으로 한 대학의 홍보활동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교수채용에 따른 教授資源에 관한情報を 상호교환토록 한다.

4) 制度의 改善 통한 大學開放化

첫째, 대학개방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學事運營의 면에서 개별대학의 自律化가 최대한 保障되도록 현행法律이 개정 혹은 폐지되어야 한다. 大學開放화의 궁극적인 가치는 교육을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수요-공급기제에 의한 일종의 거래품목으로 간주하여, 이에 따른 권리와 책임도 그 과정에 참여하는 관계자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데 있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수요를 판단하여 이에 손쉽게 對備할 수 있는 教育提供處(大學)의 자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서는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가 없다.

대학개방에 관련하여 대학자율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① 學生選拔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이 최대로 보장되도록 法律의 支援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법률을 통해서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과 절차만을 규정해 놓고 입학생의 구체적인 자격과 선발인원, 선발방식, 선발시기 등은 각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교육과정의 목적에 비추어서 학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임해야 할 것이다. ② 教育課程의 改善과 運營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이 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 각 대학이 설정하고 있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고, 대학에 속한 구성원간의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에서 먼저 대학의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學位授與와 資格證의 發給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학위 수여에 대한 절차와 심사요건 등은 각 대학의 학칙 규정 사항으로 일정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학개방을 성취하는 길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이 개방화된 상태에서는 주간과 야간수업에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주·야간의 수업은 학습자와 교수자 서로가 합의하여 편의에 따라 구분되어 개설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專門大學 졸업자 혹은 獨學에 의한 학위취득자가 編入學할 수 있는 기제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넷째, 대학의 平生教育院은 繼續教育學部로

개편을 절차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계속교육학부는 일정기간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와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자들에게만 입학을 허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계속교육학부는 기업체와 협력으로 현직에 있는 기업의 근로자들이 일정기간 대학에서 循環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계속교육학부는 비학위과정으로 전문기술과정을 운영하여 특정 분야에서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특강하도록 하여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한 수강자에게 자격증을 주도록 할 수 있다.

다섯째, 최근 민간 기업체에서 부설로 企業體研修院을 설치하여 자체 학위를 수여하고 있고, 공무원훈련원, 각종 법인단체, 전문가협회 등에서도 자체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학은 이러한 사내 교육기관과 연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학개방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대학 연계 사내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취득학점수에 따라 단계별

학력을 인정함으로써 현재 자체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학력을 사회적으로 공인받도록 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대학자원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 대단히 바람직스럽다 하겠다.

여섯째, 각 고등교육기관이 갖고 있는 定員의 조정을 통해 전체 고등교육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이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교육단계의 진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우수 학생의 선발에 있다. 그러므로 교육체제에서 하위에 위치해 있는 전문대학 부문의 교육인구가 상위에 위치해 있는 4년제 대학부문의 인구보다 다수를 점하고 있어야 안정적인 구조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대학개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체제의 하위에 위치해 있는 專門大學의 학생수를 대폭 늘려 4년제 대학의 학생수를 上廻하도록 조정하고, 아울러 전문대학에서 修學한 經驗者의 일부가 4년제 대학에 쉽게 편입학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